

# 제6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교보생명보험 우리사주조합장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 회사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68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일 시 : 2025년 3월 21일 (금) 오전 9시 30분

2. 장 소 : 서울시 종로구 종로 1,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대회의실

## 3. 회의 목적사항

### 1) 보고사항

가. 감사보고      나. 영업보고      다.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 
라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     마.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 보고

### 2) 의결사항

가.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별첨1 참조)

나. 제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(별첨2 참조)

- 제2-1호 : 사외이사 문효은 선임의 건
- 제2-2호 : 사외이사 박소정 선임의 건
- 제2-3호 : 기타비상무이사 하리 라잔(Hari R. Rajan) 선임의 건

다. 제3호 의안 :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(별첨3 참조)

- 제3-1호 :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지범하 선임의 건
- 제3-2호 :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두철 선임의 건
- 제3-3호 :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두봉 선임의 건

라. 제4호 의안 : 2025사업연도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
## ○ 주주총회 참석시 지참서류

1) 본인 : 본인 신분증, 주주총회 참석장
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인정됩니다.

2) 대리인 : 대리인의 신분증, 주주총회 참석장, 위임장(※ 주주 인감날인)

2025년 3월 6일

교 보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

대표이사 신 창 재 (직인생략)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

[별첨1]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<정관 변경 목적>

1. 「금융회사 지배구조법」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내용 반영
  - 이사회 권한에 '내부통제 등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' 항목 신설(제39조)
2. 「상법」, 「전자증권법」 내용 반영
  - 배당기산일에 관한 「상법」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, 관련 조문 정비(제13조 등)
  - 「전자증권법」에 따라, 주주명부 작성·비치(제14조의2), 주주명부 폐쇄 절차(제15조) 등 관련 조문 신설/정비
3. 기타 조문 정비
  - 사업목적을 명확화(제2조), 이사회 및 위원회의 운영 관련 명확화(제38조)
  -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및 3% rule 규정 명시(제45조) 등

<정관 변경(안) 신구조문비교표>

현행	변경(안)	비고
<p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이 회사는 회사 이해관계자 간의 장기적인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, 아래와 같이 회사 경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총 칙</p> <p>제1조(상호) &lt;생략&gt;</p> <p>제2조(목적) &lt;생략&gt; 1. &lt;생략&gt; 2. <u>보험업법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업무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 <p>제3조(소제지) &lt;생략&gt;</p> <p>제4조(광고방법)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(<a href="http://www.kyobo.co.kr">http://www.kyobo.co.kr</a>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 되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장 주식</p> <p>제5조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 ~ 제7조(주식의 종류) &lt;생략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현행과 동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총 칙</p> <p>제1조(상호) &lt;현행과 동&gt;</p> <p>제2조(목적) &lt;현행과 동&gt; 1. &lt;현행과 동&gt; 2. <u>보험업법 또는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</u> 3. <u>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인·허가 등을 받은 업무</u></p> <p>제3조(소제지) &lt;현행과 동&gt;</p> <p>제4조(광고방법)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(<a href="http://www.kyobo.com">http://www.kyobo.com</a>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 되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장 주식</p> <p>제5조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 ~ 제7조(주식의 종류) &lt;현행과 동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문 명확화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문 명확화</p>

현행	변경(안)	비고
<p>제8조(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) ① ~ ⑥ &lt;생략&gt; ⑦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8조(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) ① ~ ⑥ &lt;현행과 동&gt; ⑦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</p>	상법 반영
<p>제9조(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) ① ~ ④ &lt;생략&gt;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9조(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) ① ~ ④ &lt;현행과 동&gt; &lt;삭제&gt;</p>	상법 반영
<p>제10조(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) &lt;생략&gt;</p>	<p>제10조(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) &lt;현행과 동&gt;</p>	
<p>제11조(주식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주권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을 전자등록한다.</p>	<p>제11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</p>	전자증권법 반영
<p>제12조(신주인수권) &lt;생략&gt;</p>	<p>제12조(신주인수권) &lt;현행과 동&gt;</p>	
<p>제13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 이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3조(동등배당)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	상법 반영
<p>제14조(명의개서대리인) ①~③ &lt;생략&gt;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</p>	<p>제14조(명의개서대리인)①~③&lt;현행과 동&gt;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.</p>	조문 명확화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4조의2(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) ①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. ②회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전자증권법 반영

현행	변경(안)	비고
<p>제15조(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)  <u>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.</u>  <u>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u>  <u>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5조(주주명부 기준일)  <u>① &lt;삭 제&gt;</u>  <u>① &lt;현행과 동&gt;</u>  <u>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	전자증권법 반영
제3장 사 채	제3장 사 채	
제16조(사채의 발행) <생략>	제16조(사채의 발행) <현행과 동>	
<p>제17조(전환사채의 발행)  <u>① ~ ④ &lt;생략&gt;</u>  <u>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17조(전환사채의 발행)  <u>① ~ ④ &lt;현행과 동&gt;</u>  <u>⑤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</u></p>	상법 반영
<p>제18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 <u>① ~ ④ &lt;생략&gt;</u>  <u>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18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 <u>① ~ ④ &lt;현행과 동&gt;</u>  <u>&lt;삭 제&gt;</u></p>	상법 반영
제19조(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) <생략>	제19조(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) <현행과 동>	
<p>제20조(사채 권리의 전자등록)  이 회사는 사채권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를 전자등록한다.</p>	<p>제20조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다만,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</p>	전자증권법 반영





현행	변경(안)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7장 회 계</p> <p>제48조(사업연도)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매사업연도말에 <u>계산</u>한다.</p> <p>제49조(재무제표의 승인·공고)            ①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            1.~3. &lt;생략&gt;            ② &lt;생략&gt;            ③이사는 결산기마다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            ④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          ⑤이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, 제3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제1항 및 제2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,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<u>이사는</u> 제1항 및 제2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           ⑥이사는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50조(이익금의 처분) &lt;생략&gt;</p> <p>제51조(이익배당) ① &lt;생략&gt;           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<u>수종의</u>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            ③제1항의 배당은 <u>매결산기말</u>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            ④ &lt;생략&gt;</p> <p>제52조(중간배당) ~ 제54조(위임규정) &lt;생략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제정) - 제48조(개정) &lt;생략&gt;            &lt;신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7장 회 계</p> <p>제48조(사업연도)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매사업연도말에 <u>결산</u>한다.</p> <p>제49조(재무제표의 승인·공고)            ①<u>대표이사</u>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            1.~3. &lt;현행과 동&gt;            ② &lt;현행과 동&gt;            ③<u>대표이사</u>는 결산기마다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            ④<u>대표이사</u>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          ⑤<u>대표이사</u>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, 제3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제1항 및 제2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,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<u>대표이사</u>는 제1항 및 제2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           ⑥<u>대표이사</u>는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지체없이 <u>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</u>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50조(이익금의 처분) &lt;현행과 동&gt;</p> <p>제51조(이익배당) ① &lt;현행과 동&gt;          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<u>종류</u>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            ③제1항의 배당은 <u>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날</u>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 한다.            ④ &lt;현행과 동&gt;</p> <p>제52조(중간배당) ~ 제54조(위임규정) &lt;현행과 동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제정) - 제48조(개정) &lt;현행과 동&gt;            제49조(개정) 이 정관은 2025년 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.</p>	<p>조문 명확화</p> <p>조문 명확화</p> <p>조문 명확화</p>

[별첨2] 제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약력

성명	출생년도	주요약력	비고
문효은	1967년	고려대 언론대학원 정보통신 석사 前 (주)카카오(舊, (주)다음커뮤니케이션) 부사장 現 교보생명보험(주) 사외이사	-
박소정	1979년	Wharton School, University of Pennsylvania 보험학 박사 現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現 한국보험학회 이사	-
하리 라잔 (Hari R. Rajan)	1977년	Wharton School, University of Pennsylvania(MBA) 現 Investcorp Corsair, Managing Partner 現 교보생명보험(주) 기타비상무이사	-

[별첨3] 제3호 의안 :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약력

성명	출생년도	주요약력	비고
지범하	1955년	Wharton School,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영학 박사 現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특별초빙교수 現 교보생명보험(주)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	-
김두철	1953년	Georgia State University 위험관리 및 보험학 박사 現 상명대학교 융합기술대학 명예교수 現 교보생명보험(주)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	-
이두봉	1964년	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現 이두봉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교보생명보험(주)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	-